

-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유정희 의원 외 93명

나. 의안번호 : 제481호

다. 제출일자 : 2019. 3. 19.

라. 회부일자 : 2019. 3. 21.

2.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관악구 내 고시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1년 개통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노선 중 삼성교와 공원 공동주차장 사이에 “(가칭)박종철역”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3. 제안이유

- 2021년 개통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노선 중 미림여고부터 종점인 관악산역까지의 거리는 1120m로, 주변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고시촌 학생들의 이용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신림선 경전철 노선 중 “(가칭)박종철역”을 신설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비동의¹⁾

- 신림선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중이고 관악구청 등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여러차례 수렴하여 최종 역사 위치를 선정하였음
- 관련 법상 요구조건 미충족, 관련계획 및 설계변경, 추가협상 등 사업지연으로 시민들의 역민원 발생 우려 및 타당성 미확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모든 도시철도사업에서 역사 신설에 대한 대응 논리 부족함

5. 이 송 처

가. 정 부 : 서울특별시장

1) 교통정책과-6567(2019.4.15.)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관악구 대학동 지역공동화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개통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노선 중 (가칭)미림여고에서 (가칭)서울대역 구간에 (가칭)박종철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신림선'이라 한다)은 교통취약 지역인 서울 서남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존 도시철도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친환경 대중 교통체계를 완성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19.4월 현재 19%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참고 : 신림선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개요

- 위 치 : 셋강역(9)~대방역(1)~보라매역(7)~신림역(2)~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17.2월~'22.2월
- 총투자비 : 7,943억원(재정 3,885억원, 민간 4,058억원)
- 시 행 자 :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주간사 : 대림산업)

□ 추진경과

- '06.3월 : 사업제안서 제출
- '08.11월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고시
- '09.11월 : 제3자 제안공고
- '10.3월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13.12월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 '15.6월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도망구축계획(변경)
- '15.8월 : 실시협약 체결
- '17.1월 : 실시계획(변경) 승인
- '17.2월 : 공사착공
- '19.4월 현재 : 공사 정상 추진 중(공정률 19%)

- 동 건의안은 현재 공사 중인 신림선 노선 중 (가칭)미림여고역에서 (가칭)서울대역까지의 구간 거리가 길고, 대학동 수험생과 고시촌 지역주민들의 교통수요가 많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박종철 기념관의 명칭을 고려하여 (가칭)박종철역을 신설함으로써 더욱 높아질 대중교통 수요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신림선 정거장간 거리를 살펴보면 109정거장(서원동 성당)에서 110정거장(미림여고) 구간은 1,049m, 110정거장(미림여고)에서 111정거장(서울대 입구) 구간은 1,128m로 다른 구간에 비해 비교적 거리가 멀어 이용승객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칭)박종철역을 신설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임

※ 참고 : 신림선 정거장간 거리

구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구분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증감 (m)
	구 간	거리(m)		구 간	거리(m)	
1	101(셋강역)~102(대방역)	700	1	101(셋강역)~102(대방역)	609	-91
2	102~103	770	2	102~103	808	+38
3	103~104(보라매역)	650	3	103~104(보라매역)	626	-24
4	104~105	730	4	104~105	674	-56
5	105~106	590	5	105~106	623	+33
6	106~107	530	6	106~107	518	-12
7	107~108(신림역)	580	7	107~108(신림역)	635	+55
8	108~109(서원동성당)	920	8	108~109(서원동성당)	836	-84
9	<u>109~110(미림여고)</u>	<u>1,060</u>	9	<u>109~110(미림여고)</u>	<u>1,049</u>	<u>-11</u>
10	<u>110~111(서울대역)</u>	<u>1,200</u>	10	<u>110~111(서울대역)</u>	<u>1,128</u>	<u>-72</u>

- 다만, (가칭)박종철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기존 110정거장 (미림여고)와 불과 400m 떨어진 위치임에 따라 정거장 간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신림선 전체 노선의 운행시간이 증가할 수 있고, 신림선 역사위치 선정시 관악구청 등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 최종 위치를 선정한 바 있음

또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만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역 신설에 대한 서울시의 타당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³⁾

아울러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신림선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고, 정거장 신설에 따른 추가협상 및 설계변경 등으로 신림선 개통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임

※ 참고 : 경제적 타당성 확보 관련 법 및 지침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건설보조금에서 경전철 분담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0:40의 비율로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가 40:60으로 한다.**
⑤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총사업비 중 보상비, 최소운영수입보장, 해지시 지급금 등은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보상비 제외)	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계	분담금	국고	지방비
100%	50%이상	50%이내	20%	18%(12%)이내	12%(18%)

※ ()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2) 관악구청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2회, 주민설명회 3회 등

3) B/C 0.17